

특허협력조약

발신: 국제조사기관

PCT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PCT규칙 43의2.1)

수신:
특허법인 무한

대한민국 06144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60, 8층 (역삼동, 화물재단빌딩)

발송일 (일/월/년) 2020년 02월 14일 (14.02.2020)

출원인 또는 대리인의 서류참조기호
FPE-2019-0414-PCT

추가적인 조치
아래 2를 참조

국제출원번호
PCT/KR2019/015011

국제출원일 (일/월/년)
2019년 11월 07일 (07.11.2019)

우선일 (일/월/년)
2018년 11월 30일 (30.11.2018)

국제특허분류(IPC)
G06F 3/01(2006.01)i, G06F 3/041(2006.01)i, G06F 3/16(2006.01)i, H05B 45/00(2020.01)i

출원인
주식회사 씨케이머티리얼즈랩

1. 본 견해서는 다음 기재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제1기재란 견해서의 기초
- 제2기재란 우선권
- 제3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 부작성
- 제4기재란 발명의 단일성 결여
- 제5기재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 제6기재란 특이 인용문헌
- 제7기재란 국제출원의 흠결
-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2. 추가적인 조치

국제예비심사가 청구되면, 본 견해서는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의 견해서로 간주될 것입니다. 다만, 출원인이 본 기관 이외의 기관을 IPEA로 선택하고, 그 선택된 IPEA가 PCT규칙 66.1의2(b)에 따라 본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가 위와 같이 간주되지 않을 것임을 국제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본 견해서가 상기와 같이 IPEA의 견해서로 간주되는 경우, 출원인은 서식 PCT/ISA/220의 발송일로부터 3월 또는 우선일 부터 22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전에 의견서 및 보정서(해당하는 경우)를 IPEA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선택사항에 대하여는 서식 PCT/ISA/220에 대한 안내문을 참조하십시오.

ISA/KR의 명칭 및 우편주소
대한민국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4동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팩스번호 +82-42-481-8578

본 견해서의 완료일
2020년 02월 14일 (14.02.2020)

심사관
변성철
전화번호 +82-42-481-8262



제1기재란 본 견해서의 기초

1. 언어와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원시의 언어로 된 국제출원

국제조사를 위하여 _____ 로 번역되어 제출된 국제출원의 번역문
(PCT규칙 12.3(a) 및 23.1(b))

2. 본 견해서는 PCT규칙 91에 따라 당해 기관이 허가하였거나 당해 기관에 통보된 **명백한 잘못의 정정**을 고려하여 작성되었습니다(PCT규칙 43의2.1(b)).

3. 국제출원에 게시된 핵산염기 및/또는 아미노산 서열과 관련하여, 본 견해서는 아래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아래의 형태로 출원시 국제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b. PCT 규칙 13의3.1(a)에 따라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c. 국제조사만을 목적으로 국제출원일 이후에 아래 형태로 제출된 서열목록

부록 C/ST.25 텍스트 파일 (규칙 13의3.1(a))

서면 혹은 이미지 파일 (규칙 13의3.1(b) 및 시행세칙 713)

4. 추가로 서열목록에 대하여 하나 이상의 버전이나 사본이 제출된 경우, 후속 버전 또는 추가된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출원시 출원의 일부를 구성하는 정보와 동일하거나 또는 출원시의 게시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진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5. 추가 의견:

제5기제란 신규성, 진보성 또는 산업상이용가능성에 관한 견해(PCT규칙 43의2.1(a)(i)), 이를 뒷받침하는 인용문헌 및 설명

1. 견해

신규성 (N)	청구항	3-14, 16, 18, 20	있음
	청구항	1-2, 15, 17, 19, 21-23	없음
진보성 (IS)	청구항	없음	있음
	청구항	1-23	없음
산업상 이용가능성 (IA)	청구항	1-23	있음
	청구항	없음	없음

2. 인용문헌 및 설명:

참고한 인용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D1: KR 10-1901364 B1 (주식회사 씨케이머티리얼즈랩) 2018.11.22

D2: KR 10-2017-0120473 A (주식회사 씨케이머티리얼즈랩) 2017.10.31

I. 신규성 및 진보성(PCT 제33조(2) 및 (3))

1. 청구항 1-14

1.1. 청구항 1

청구항 1과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입력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310)(D1: 단락 [0033]-[0034]; 및 도면 3 참조); 입력된 콘텐츠의 비트 패턴에 대응하는 햅틱 패턴 데이터를 생성하는 햅틱 패턴 데이터 생성부(320)(D1: 단락 [0033]-[0036]; 및 도면 3 참조); 타겟 햅틱 장치에 전송할 햅틱 패턴 데이터를 포함하는 무선 데이터를 생성하는 무선 데이터 생성부(330)(D1: 단락 [0038]; 및 도면 3 참조); 및 생성된 무선 데이터를 햅틱 장치에 전송하는 무선 데이터 전송부(350)(D1: 단락 [0033], [0043]; 및 도면 3 참조)를 포함하는 제어 장치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의 모든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항 1은 인용문헌 D1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신규성이 없습니다.

1.2. 청구항 2-14

청구항 2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햅틱 패턴 데이터 생성부(320)는 콘텐츠의 비트 패턴에 대응하는 햅틱 패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고, 조명 패턴 데이터 생성부(360)는 무대 조명 데이터에 기초하여 햅틱 장치에 적용될 조명 패턴을 결정하고, 결정된 조명 패턴에 기초하여 조명 패턴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것(D1: 단락 [0034], [0044]; 및 도면 3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추가 기재란에 계속

제8기재란 국제출원에 관한 의견

청구범위, 발명의설명 및 도면의 명료성에 관하여 또는 청구범위가 발명의설명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청구항 12는 햅틱 데이터 생성 장치에 관한 것이나, 패턴 데이터 생성 장치에 관한 청구항 1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2는 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PCT 제6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습니다.

(비고: 본 국제조사 보고서 및 견해서에서는 청구항 12의 '햅틱 데이터 생성 장치'를 '패턴 데이터 생성 장치'로 가정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제5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3, 11-14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인용문헌 D1의 무선 데이터 생성부(330)에 의해 생성되는 무선 데이터는 타겟 햅틱 장치의 동작과 관련된 동작 제어 데이터 및 햅틱 장치의 조명 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조명 패턴 데이터를 더 포함할 수 있고, 동작 제어 데이터는 햅틱 장치의 햅틱 자극 주기, 햅틱 자극 세기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것(D1: 단락 [0042];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4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콘텐츠의 비트 패턴은 수신부(310)를 통해 수신한 콘텐츠 데이터에 포함된 오디오 신호의 오디오 비트 패턴일 수 있는 것(D1: 단락 [0034]; 및 도면 3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5-6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인용문헌 D1의 필터링 및 다운 샘플링 과정들이 필터들(525, 526, 527, 528)에 의해 수행됨에 따라, 햅틱 패턴 데이터 생성부는 시간 영역에서 오디오 신호를 주파수 대역 별로 분할할 수 있는 것(D1: 단락 [0062]; 및 도면 5b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7-10의 추가적인 특징들은 인용문헌 D2의 촉각 패턴은, 촉각 메시지 프로그램 내의 촉각 패턴 입력창(710)에 송신자가 터치하는 강도, 위치, 시간, 이동 방향의 조합으로 생성될 수 있는 것(D2: 단락 [0075]-[0080]; 및 도면 14-15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2는 인용문헌 D1에 의해 신규성이 없고, 청구항 3-6, 11-14는 인용문헌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으며, 청구항 7-10은 인용문헌 D1 및 D2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2. 청구항 15-18

2.1. 청구항 15

청구항 15와 가장 근접한 인용문헌 D1에는 햅틱 패턴 데이터를 포함하는 무선 데이터를 수신하는 수신부(610)(D1: 단락 [0064]-[0065]; 및 도면 6 참조); 수신한 무선 데이터로부터 햅틱 패턴 데이터를 추출하는 패턴 데이터 추출부(620)(D1: 단락 [0066]-[0067]; 및 도면 6 참조); 추출된 햅틱 패턴 데이터에 기초하여 액추에이터(640)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생성하는 액추에이터 제어부(630)(D1: 단락 [0068]-[0069]; 및 도면 6 참조); 및 액추에이터 제어 신호에 기초하여 햅틱 자극을 발생시키는 액추에이터(640)(D1: 단락 [0070]; 및 도면 6 참조)를 포함하는 햅틱 장치가 개시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5의 모든 기술적 특징은 인용문헌 D1에 나타나 있으므로, 청구항 15는 인용문헌 D1으로부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5는 인용문헌 D1에 의해 신규성이 없습니다.

2.2. 청구항 16-18

청구항 16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액추에이터 제어부(630)는 패턴 데이터 추출부(620)에 의해 추출된 햅틱 패턴 데이터에 기초하여 액추에이터(640)를 제어하기 위한 제어 신호를 생성할 수 있는 것(D1: 단락 [0068]-[0069]; 및 도면 6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청구항 17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패턴 데이터 추출부(620)는 수신부(610)를 통해 수신한 무선 데이터에 포함된 조명 패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조명부(660)는 추출된 조명 패턴 데이터에 기초하여 조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D1: 단락 [0067]; 및 도면 6 참조)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청구항 18의 추가적인 특징은 인용문헌 D1의 패턴 데이터 추출부(620)는 수신부(610)를 통해 수신한 무선 데이터에 포함된 조명 패턴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 조명부(660)는 추출된 조명 패턴 데이터에 기초하여 조명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D1: 단락 [0067]; 및 도면 6 참조)으로부터 쉽게 설계 변경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항 17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신규성이 없고, 청구항 16, 18은 인용문헌 D1에 의해 진보성이 없습니다.

3. 청구항 19-20

청구항 19-20은 패턴 데이터 생성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 3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19는 청구항 1과 같은 이유로 신규성이 없고, 청구항 20은 청구항 3과 같은 이유로 진보성이 없습니다.

4. 청구항 21-22

다음 페이지에 계속

추가 기재란

이전 기재란의 공간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이전 기재란의 연속

청구항 21-22는 패턴 데이터 재생 방법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5, 17과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1-22는 청구항 15, 17과 같은 이유로 신규성이 없습니다.

5. 청구항 23

청구항 23은 청구항 19의 방법을 컴퓨터에서 실행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19와 기술적 특징이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청구항 23은 청구항 19와 같은 이유로 신규성이 없습니다.

II. 산업상 이용가능성(PCT 제33조(4))

청구항 1-23은 산업상 이용가능합니다.